

2023년 제1회 목포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목포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 16.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주요 직무

□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예정 직급	인원	기간	근무 시간	임용 예정 부서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행정 7급	6명	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의회사무국

- ※ 채용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 근무처는 조직 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내용

구분	임용 예정 분야	임용 예정 직급	직무 내용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행정 7급	○ 의원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활동 지원 ○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지원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등 관련자료 취합 ○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학력·지역·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써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및 실 무 경 력
정 책 지 원 관 (일 반 임 기 제 행 정 7 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연구소,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공공행정, 지방자치, 법무, 예산, 회계, 연구, 감사 분야 실무경력 *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함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2년으로 인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4 임용조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보수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별표13]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4,776	46,006	주 40시간 근무 기준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이상)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중·하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 | |
|--------------------|-----------------|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일정

모 집 공 고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3. 1. 16.(월) ~ 1. 27.(금)	‘23. 1. 30.(월) ~ 2. 2.(목)	‘23. 2. 15.(수) (예 정)	‘23. 2. 24.(금) (예 정)	‘23. 3. 2.(목) (예 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목포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mokpo.go.kr) ‘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023. 2. 2.(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FAX·이메일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3년 목포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1-270-8025)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받을분 기재금지) 동봉 제출
※ 정부수입인지 불가

7

제 출 서 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출서류목록 (서식 제1호)		공통
2.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7,000원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첨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정부수입인지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공통
3.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공통
4. 경력 증명서 (서식 제4호)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 경력증명서 양식상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식 제4호)으로 경력 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공통

구 분	내 용	비 고
	○ <u>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u> ○ <u>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u>에 한해 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경력증빙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total.comwel.or.kr) 제출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공통
6.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5호)	○ A4용지 2매 ○ 출생지•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공통
7.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제6호)	○ A4용지 3매 내외(최대5매) ○ 출생지•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공통
8. 주민등록초본 1부	○ 응시자 모두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통
9.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8호)	공통
10. 최종학교 졸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포함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서식 제9호>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공통
11. 자격증제출		해당자
12. 기타 실적 인정 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 논문 제목과 저자명이 기재된 표지와 요약서 3매 이내 ○ 기타 능력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해당자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증명서류는 <u>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분</u> 을 제출		

-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mokpo.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61-270-8025)

참고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6명

주요업무	○ 의원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활동 지원 ○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지원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등 관련자료 취합 ○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검토에 필요한 지식 ○ 지방의회 관련 지식 ○ 시정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경 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연구소,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공공행정, 지방자치, 법무, 예산, 회계, 연구, 감사 분야 실무경력 *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함
--------	---